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59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9월 11일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성연 의원이 2023년 8월 8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과 이민석 의원이 2023년 8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1.)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8조단서).
-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17항).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안 별표 3).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함(안 제2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18조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연가일수 중”을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남자 채취를 하여 제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남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남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남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3 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

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u></p>
<p>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인</u>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u>2년 미만의</u>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u>2일</u>을 더한다.</p> <p>~ (생략)</p>	<p>제18조(연가일수) ----- ----- . ----- ----- ----- ----- <u>5년 미만인</u> ----- ----- <u>5년 미만의</u> ----- ----- <u>3일</u>-----.</p> <p>~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u>연가일수 중</u>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 ----- <u>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⑦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u>은 <u>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u>를 받을 수 있다. 다만, <u>체외수정 시술의 경우</u> <u>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u>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p>⑦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u>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난임치료 시술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1. <u>여성공무원</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p> <p>가. <u>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u>: 총 2일(<u>시술 당일에 1일</u>과 <u>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u>이거나 <u>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u>)</p> <p>나. <u>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u>: 총 3일(<u>시술 당일에 1일</u>과 <u>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u>이거나 <u>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u>)</p> <p>다. <u>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u>: 총 4일(<u>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u>과 <u>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u>이거나 <u>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u>)</p> <p>2. <u>남성공무원</u>: <u>정자 채취일에 1일</u></p>
<p>⑧ ~ ⑩ (생략)</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현 행

⑰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생 략)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 정 안

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